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7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이원욱·신현영·변재일

김병욱 · 김철민 · 최종윤

임종성 · 이정문 · 윤영찬

정청래 · 윤후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도 있는 상황임.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도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자가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을 치사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이들에 대한 범죄가 상습적인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사망에 이른 아동이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아동에 한정한다)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아동이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아동에 한정한다)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이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아동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죄

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생 략)	제4조(아동학대치사)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서 사망에 이른 아
	동이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
	른 장애인(아동에 한정한다)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생 략)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서 생명에 대한 위
	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
	치의 질병에 이른 아동이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
	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아동에 한정한다)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u>다.</u>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	제6조(상습범) ①
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	
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	
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한다. <u>다만, 다른 법률에 따</u>	<u><단서 삭제></u>

<u>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이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아동에 한정한다)인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